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56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이재관·송재봉·이병진

박지원 · 허성무 · 양부남

박지혜 • 전진숙 • 박해철

정진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1987년부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LNG)를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부터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 지역에 마을 단위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이는 서민연료라 불리는 LP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책이나, 기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던 사업자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중·소규모 판매사업자는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업전환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폐업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또는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또는 사업전환의 지원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1조의2(액화석유가스 판매사 업자의 폐업 지원) ①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
	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 를 한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또는 「중소기
	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전환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시 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또는 사업전환의 지원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
	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